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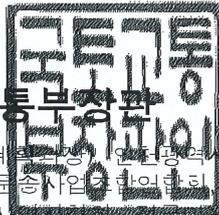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42(2021.1.2.)호 관련입니다.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1.2.)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2.)를 통해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2.5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을 붙임과 같이 조정하여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각 지자체 및 조합·연합회 등에서는 대상이 되는 시설,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등에 이를 안내하여 해당 방역 조치가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만, 금번에 새롭게 조정되어 시행되는 방역 조치사항(아래 밑줄 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이 불가하며, 강화된 조치만을 시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 아 래 -

- 적용 기간 : 2021년 1.4(0시) ~ 2021년 1.17(24시)까지
-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붙임 1.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2. 수도권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등 각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지 서울특별시(버스정책과장), 서울특별시(주차계통과장), 인천광역시(교통정책과장), 인천광역시(택시화물과장), 경기도지사(버스정책과장),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 전국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시무관승진에
성자 장형석 버스정책과장 전결 2021.1.5.
니기호

협조자

시행 비스정책과-48 (2021. 1. 5.)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824 팩스번호 02-2110-0695 / jhs0116@molit.go.kr / 대국민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1. 관련 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1.2.)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2)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2.5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대책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3. 중앙정부, 지자체, 관련 산하 및 공공기관에서는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금번에 새롭게 조정되어 시행되는 방역 조치사항(아래 밑줄 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완화된 조치 시행이 불가하며, 강화된조치만을 시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 아 래 -

○ 적용 기간 : 2021년 1.4(0시) ~ 2021년 1.17(24시)까지

○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 대상 시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홀덤펍,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파티룸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집합금지

붙임 1.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 대상 시설 : 학원, 교습소, 문화센터 등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2. 수도권 학원 등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 식당·카페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3. 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백화점·대형마트,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300㎡ 이상)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4.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 수도권 지역 숙박시설
 -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5. 수도권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모임·행사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50인 이상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기준 미적용

붙임 6.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6) 종교시설

○ 대상 시설 : 종교시설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7.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7) 고위험사업장

○ 대상 시설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8.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8) 교통시설

○ 대상 시설 : 대중교통 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붙임 9. 수도권 대중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9) 국공립시설

- 소관 부처·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 및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제한 원칙
 - * 부처·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10) 아파트 내 편의시설

-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복합 편의시설 운영 중단

11) 주민센터

-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12)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13)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14)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4. 위와 같은 방역 조치의 이행을 위해

- 각 부처 및 지자체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 대상 시설에 방역 지침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 각 지자체는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관련 단체 등에 안내 하고,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행정안전부)는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각 지자체, 관련 부처의 이행상황 점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